

##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

[시행 2025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88호, 2024. 12. 30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고용보험기획과), 044-202-7358

### 1.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

- 가. 월별보험료의 상한액: 512,440원
- 나. 연간보험료의 상한액: 6,149,280원

### 2.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

- 가. 월별보험료의 상한액: 612,730원
- 나. 연간보험료의 상한액: 7,352,760원

### 3. 행정사항

#### 가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나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